##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02 발의연월일: 2025. 6. 10.

발 의 자 : 안상훈·최보윤·주호영

안철수 · 조경태 · 박성훈

조정훈 • 박덕흠 • 고동진

백종헌 · 김소희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원 투입 규모 대비 조사 결과의 활용 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만으로 활용 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 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0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
	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민건
	<u>강영양조사, 그 밖에 이 법에</u>
	따른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하
	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암관리법」에 따
	른 국립암센터,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대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
	<u>청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u>야 한다.</u>